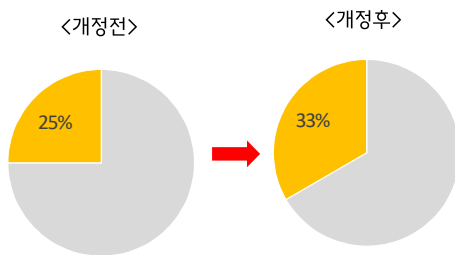


독립이사제도 도입와 감사위원 선임 시 3% 룰 확대

2026-07-24

- 지난해 개정된 1차 상법개정 중 독립이사제도 도입과 감사위원 선임 시 3% 룰이 확대가 26년7월23일자로 시행
- 독립이사제도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명칭이 변경되며, 의무선임 비율이 기존 1/4에서 1/3로 확대됨.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 부여로 27년 7월22일까지 요건 충족하면 됨
- 모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3%까지만 의결권 행사 가능.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으로 기관투자자, 소수주주의 영향력 확대 기대
- 9월10일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,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시행될 예정
- 소수주주권 강화를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상법개정 전후 독립이사 의무선임 비율



자료: 법제처, SK증권

감사위원 분리선출

구분	3% 룰 적용대상	내용
개정전	사외이사인 감사위원	최대주주라도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적용하지 않음
	그외 감사위원	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3% 룰 적용
개정후	모든 감사위원	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3% 룰 적용

자료: 법제처, SK증권

상법개정안 내용별 시행시기

구분	내용	시행시기
1차 상법개정	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신설(제382조의3)	25년 7월 22일
	독립이사 제도 도입(제542조의8)	26년 7월 23일
	감사위원 선임 시 3% 룰 확대(제542조의12)	26년 7월 23일
	전자주주총회 도입(제542조의 14 신설)	27년 1월 1일
2차 상법개정	집중투표제 의무화(제542조의7 제3항)	26년 9월 10일
	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(	26년 9월 10일
3차 상법개정	자기주식 1년 내 소각 원칙(제341조의4 제1항)	26년 3월 6일

자료: 법제처, SK증권

COMPLIANCE NOTICE

작성(최관순)은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 중복별 투자권은 다음과 같습니다.
 투자판단 3단계(6개월/1년) 15% 이상 > 매수 / -15% ~ -15% > 중립 / -15% 미만 > 매도